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0100128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 02. 22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11. 11

대 박 통

정 보 공 개 서

대박통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대 박 통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84
- ◆ 대표전화 : 055-231-9192
- ◆ 팩 스 : 055-231-9192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55-231-919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대박통을 시작한 날
2. 대박통 연혁
3. 대박통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양업 중인 대박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대박통 가맹점 수
6. 대박통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대박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대박통	대박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84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2. 02. 14	김종혁	055-231-9192	055-231-9192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08-20-6956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대박통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대박통	
상 호	대박통 000점	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맹점주가 결정하여 가맹본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상 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12-0039776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75-6660000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0,005	4,643	45,362	236,553	17,157	21,291
2022년	74,051	18,545	55,506	350,975	26,847	30,949
2023년	281,208	117,941	163,266	325,126	28,182	30,76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대박통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 종 혁	공 동 대 표	2012.2.14.~2018.3.11.	대박통 대표	총 괄 업 무
		대 표	2018.3.12.~현재	대박통 대표	총 괄 업 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명)		직 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대박통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건본 이미지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대박통		2012.11.26. 출원 2013.12.17. 등록	4120120039776 4102756660000	김홍식 김종혁	2023.12.17. (2023.12.1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대박통』 가맹사업 현황

1. 대박통을 시작한 날 : 2012년 2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9년 2월 13일)

2. 대박통 연혁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박통	대박통	김종혁 김홍식	2012.2.14.~2018.3.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84
대박통	대박통	김종혁	2018.3.12.~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84

3. 대박통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박통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해물숯불구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대박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20	17	3	24	23	1	21	20	1
서 울	-	-	-	-	-	-	-	-	-
인 천	-	-	-	-	-	-	-	-	-
부 산	3	3	-	7	7	-	8	8	-
대 구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1	1	-	-	-	-	-	-	-
세 종	-	-	-	-	-	-	-	-	-
경 기	-	-	-	-	-	-	-	-	-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4	2	2	3	3	-	3	3	-

경 북	-	-	-	-	-	-	-	-	-
경 남	12	11	1	14	13	1	10	9	1
제 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대박통 가맹점 수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 규 개 점	계 약 종 료	계 약 해 지	명 의 변 경	연 말
2021	16	5	4	-	-	17
2022	17	7	-	1	1	23
2023	23	2	-	5	1	20

6. 대박통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대박통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대박통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 체	20	339,267	12,164	582,786	33,124	131,415	4,943	
서 울	-	해당없음						
인 천	-	해당없음						
부 산	8	422,338	13,946	582,786	33,124	235,573	6,634	
대 구	-	해당없음						
광 주	-	해당없음						
대 전	-	해당없음						
울 산	-	해당없음						
세 종	-	해당없음						
경 기	-	해당없음						
강 원	-	해당없음						
충 북	-	해당없음						

충 남	-	해당없음						
전 북	-	해당없음						
전 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 북	-	해당없음						
경 남	9	265,426	10,302	428,688	20,112	131,415	4,943	
제 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매출파악 어려움의 사유가 있는 3개 가맹점은 매출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0개가 아닌 실제 1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비치된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대박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대박통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1,94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대박통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대박통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3,876	-	-	
광고	-	-	3,876	-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영업부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055-231-9351

귀하는 예치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일 날 국민은행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대박통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비 고
가 맹 비	16,500	계약서 작성일 예치	
교 육 비	1,100		- 가맹점당 1인
총 계	17,600		
반환 조건	- 귀하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당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가 설비 등을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공사공급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 등의 공사완성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 당사가 공사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기간의 만료		

※ 참조 - 가맹금의 반환사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일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귀하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귀하에게 도달된 날부터 귀하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6.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하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귀하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부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보증금 및 담보

계약 종료 시 잔존 채무액과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지 급 기 한
이 행 보 증 금	5,000	계약서 작성일
반환 조건	•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계약기간 중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또는 일부 충당된 경우	
비 고	• 반환 시 별도의 이자지급은 없는 것으로 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22,600]천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가 맹 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금 액	16,500	1,100	5,000
총 계	22,6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66㎡ 기준, VAT 포함)

구 분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한
인테리어(내·외장)	권 장	44,000	2,200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구입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협력업체)	분납제도(15p) 참조
주방기기 및 비품		8,250	412		
간 판		3,300 (높이 : 1.5m~7m)	165		
의 탁 자	강 제	1,760 (4인석기준 1세트 당 220)	88	가맹본부, (협력업체)	인테리어 등의 중도금 지급일
초도물품 대금		5,500	-		
공사 감독비용	권 장	165(1일)	-		
총 계	62,810(공사기간에 따라 감독비가 산정되므로 감독비는 제외된 금액임)		3,140		
반환 조건	인테리어(내·외장)·간판 및 기타공사			공사 전 계약취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주방기기 및 집기 • 비품류 • 초도물품대금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내 • 외장) • 간판 및 기타공사	공사 완료 후 반환 불가
	주방기기 및 집기 • 비품류 • 초도물품대금	상품 공급 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가 귀하에게 영업지역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 입지는 당사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합니다.
- ② 당사는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귀하에게 제시합니다.
- ③ 귀하와 당사가 협의하여 그 중에서 귀하가 한 곳을 선택합니다.
- ④ 당사가 지도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영업지역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영업개시 전까지 해당 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와 종업원의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귀하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은 영업개시 전의 신규교육과 영업개시 후의 재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합니다.
2. 당사가 신규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7 일)전에 장소와 시간,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화, 모바일 상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재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귀하에게 교육실시 (7 일)전에 장소와 시간, 그 비용 및 산출근거, 교육내용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한 자는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5. 귀하의 점포관리자가 신규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7.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1일당 금 일십육만오천 원(₩ 165,000)(VAT 포함)으로 하며, 숙박비용은 실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대박통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귀하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착 수 금	중 도 금	잔 금
금 액	공사금액의 50%	공사금액의 40%	공사비의 10%
지급시기	계약서 작성일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가맹사업 개시 3일 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지급금

구 분	정 기 지 급 금
지급대상	대박통
금 액	매출액의 2%(VAT 별도)
지급기한	매 익월 10일
반환조건	소 멸(반환불가)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사용, 영업지원, 점포 디자인사용 등
비고	월중 오픈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

② POS 사용료

구 분	POS 사용료(단위 : 천원, VAT 포함)
지급대상	(협력업체)
금 액	55
지급기한	추 후 협 의
반환조건	소 멸(반환불가)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POS 사용 대가
비고	월중 오픈 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

③ 광고·판촉 분담금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	-----------

지급대상	대박통
금 액	당사 : 50%,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 사업자 : 50%
지급기한	V-9. 참조
반환조건	광고·판촉 활동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 활동을 시행하지 하는 경우
비고	광고·판촉 활동 필요 시점 : 협의 결정

④ 기타 교육비

구 분	기타 교육비
지급대상	대박통
금 액	1일당 금 일십육만오천 원(₩ 165,000)
지급기한	교육 완료 후 지급
비고	귀하가 필요시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경우

⑤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부담

구 분	지식재산권 변경 시 비용 부담
지 급 대 상	현재 미지정
금 액(천원)	추후협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⑥ 점포환경개선 비용

구 분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대상	대박통
금 액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고	VII-1. 참조

⑦ 지연이자

구 분	지연이자
지급대상	대박통
금 액	연 20%
지급기한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비고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 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 독 항 목	내 용	시 기
고객서비스 상태관리	고객서비스 상태 점검	년 2회
품질기준 및 상품관리	당사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상품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각종 설비 및 기기관리	각종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합니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할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1. 양수인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계약유지 또는 해지에 관한 선택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귀하는 위의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승인을 거절 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가맹계약서 제36조제4항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으로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 당사는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사용권의 권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 나. 당사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또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귀하에게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날로부터 또는 지식재산권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가맹점의 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라. 당사는 귀하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포함)하여 귀하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마.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가. 당사는 가맹사업을 중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로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는 즉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나. 귀하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 할 경우 당사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가맹계약서 제36조제4항 참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양도인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대박통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에게 양수도 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대행수수료로 금 오십오만 원 (₩ 55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의 부담

가.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이행보증금 금 오백만 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잔존 이행보증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나. 신규 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금 일천육백오십만 원 (₩16,500,000)(VAT 포함)과 이행보증금 금 오백만 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잔존 이행보증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 잔여계약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와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의 공통사항

양수인은 소정의 교육 •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금 일백일십만원(₩1,100,000)(VAT 포함)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교육 •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기간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이하 종료일이라 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 • 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종료일의 익일부터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종료일 (3일)전에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여 재고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재고품 등이 만료일 이후까지 남게 될 경우 귀하에게 적정한 소진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표지와 설비 등은 소진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은 소진일 익일부터 중단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제1항의 경우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를 철거했다는 증거를 당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영업지역에서 게재 중인 지역광고 등의 경우 종료일 전에 자진 철거 • 회수 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 •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가 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주었을 경우 소진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로 합니다.
6. 제5항의 경우 귀하가 당사에게 영업의 중지 및 영업표지를 철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당사는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귀하에게 교부 하지 아니합니다.

7. 귀하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상품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8.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귀하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대박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 체결 후 별지로 제공)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업자로부터 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대박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대박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대박통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내용 및 조건	위 반 시 책임
1. 당사는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품을 귀하에게 공급하며, 타 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처를 변경,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영업표지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당사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비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는 당사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비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 합니다. 3. 당사는 상품변경, 시장상황 및 구매 가능성에 따라 공급 상품을 조정(추가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 내용을 귀하에게 통보하겠습니다.	1회 위반 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사유에 해당되며, 상품의 공급을 중단 받은 후에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해지사유에 해당 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허가 없이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판매·대여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및 제한	가격 통보 방법
1. 당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 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와 달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반드시 당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귀하에게 타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전산 상으로 공급가격조건을 통지할 것입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해물숯불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대박통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와 합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1.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귀하의 영업지역을 재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 귀하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영업지역 재조정을 합의합니다. 귀하가 영업지역의 재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동의를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이 완료됩니다.(신규점포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대박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5%	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대박통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는 귀하가 계약의 종료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거절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

나. 계약 종료 사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귀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나도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
2.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귀하가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6. 귀하가 (2회) 이상 상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7.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9.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대박통』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0.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1. 귀하가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당사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자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13.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등한 영업을 하는 경우
14. 귀하가 일일 판매현황을 전산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하지 아니 하는 경우
15. 귀하가 영업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또는 고의로 누락하여 보고하는 경우
16. 귀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17. 귀하가 당사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18. 귀하가 휴업을 실시하며 휴업사실을 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19. 귀하가 (2회) 이상 가맹계약서 제31조(제 • 상품 등의 공급중단)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1.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2. 귀하가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23. 귀하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② 귀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와 과 약정한 서비스 등의 공급 또는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아

니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3.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③ ① 및 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

① 당사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귀하가 당사가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② 귀하는 당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3. 당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당사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①과 ②의 경우 당사와 귀하는 서면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법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귀하는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2 개월) 전 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귀하는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예. 귀하가 가맹점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사는 승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가 승인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이행보증금 금 오백만 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잔존 이행보증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5. 제4항의 경우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금 일천육백 오십만 원(₩16,500,000)(VAT 포함)과 이행보증금 금 오백만 원(₩ 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제4항 또는 제5항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당사에 양수인과의 양수도 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행수수료로 금 오십오만 원(₩550,000)(VAT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제4항 또는 제5항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 양수인과 작성한 양수도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8. 가맹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운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9. 제4항 내지 제5항의 양수인 또는 제8항 제1호의 새로운 대표자는 소정의 교육 •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금 일백일십만 원(₩1,100,000)(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교육 •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①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인의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상속인이 귀하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 금 일백일십 만 원(₩1,100,000)(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당사에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사망일로 소급하여 종료됩니다.
3. 상속인이 가맹점사업자로서 합당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② 귀하는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대박통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귀하의 영업일은 (주 6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사전 승인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및 휴업내용을 표시하여 고객들에게 휴업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일)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 시 간	영 업 일 수	비 고
17:00 ~ 익일 03:00	주 6일	문의 : 관리팀(055-231-9192)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가맹점을 점검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의 점검에는 고객서비스 상태 • 표준 레시피 준수 • 품질기준 준수 • 상품관리 • 회계처리 • 각종 설비 및 기기관리가 포함됩니다.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대한 점검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발송 시 점검에 대한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점검결과 부진점		
1회	연속 2회	연속 3회
- 협조공문 발송	- 1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 휴점 예고 - 상품공급 중단	- 2차 시정조치 공문 발송 - 3일 휴점 - 상품공급 중단

	- Recall 교육	- 경영진단
3.	귀하는 당사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당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귀하가 실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관계서류(회계장부, 영업장부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의 위생상태 점검은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6 개월)에 (1 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위생점검 직원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7.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점검 후 당사의 시정요구사항 또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고지 없이 다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대박통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 고 성 격	부담 비율		부담 절차	비 고
		본 사 부담	가 맹 점 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	광고 계획 공고→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광고,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 음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각 가맹점 사업자들이 안분 하며, 지역광고일 경우는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광고 • 판촉활동 중 甲이 상품광고 또는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방법 • 시기 •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비용부담은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비용부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점 모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 판촉의 경우 그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3. 제1항 판촉활동의 경우 당사는 영업이 부진한 지역에 판촉 기간 또는 비용부담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귀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당사는 광고 또는 판촉 실시 (1개월)전까지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 • 판촉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필요 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 • 방법 • 시기 • 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제5항의 경우 귀하의 요청에 의해 당사는 경품, 기념품 및 팸플릿, 전단지, 리플릿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귀하가 가맹점 영업개시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홍보 • 판촉행사를 직접 진행하며, 비용도 귀하가 부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귀하는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 또는 당사로부터 제공 받은 매뉴얼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비밀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귀

하는 당사에게 사천오백만(4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가맹계약서 해지 사유 또는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사천오백만(45,000,000)원(지급한 가맹비의 3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소와 동일한 지역에 당사가 운영하는 주메뉴와 동종의 메뉴를 이용한 프랜차이즈점 또는 동종의 영업소 등을 창업할 경우 금 일억 원(1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계약의 만료 후 당사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만료일의 익일(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준 경우에는 소진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1일당 금 일십만 원(₩100,000) 씩 계산하여 계약종료 후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당사의 요구에 의해 또는 귀하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이 중도에 합의 해지되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타방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 사천오백만(45,000,000)원.

나. 계약기간이 6개월을 경과 한 경우 삼천만(30,000,000)원.

6. 제1항 및 제2항, 제5항 제1호의 경우 귀하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여 월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삼천만(30,000,000)원.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당사는 귀하의 이행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다.
8. 본 계약상 금전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당사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66㎡ 기준, VAT포함)

구 분	내 용	소 요 기 간	소 요 비 용
		30일 내외	-
개설상담 신청	- 가맹점 개설 상담 신청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1~3일	없 음
점포조사	- 상담 후 점포 조사	1~3일(숙고기간에 병행)	없 음
숙고기간	-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14일(자문 시 7일)	없 음
점포 확정	- 점포 확정	1일	점포 임대 비용
실측 및 견적 산출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2~3일	없 음
가맹계약 체결	- 가맹비 예치 - 하나 은행	1일	22,600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5~10일	
인허가 및 교육이수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개점 전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개점준비	- 초도물품 입고	2일	
개점	- 영업개시	즉시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 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Ⅶ.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대박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 육 방 식	기 한	비 고
신 규 교 육	1. 대박통 사업의 현재와 미래 2. 매장운영 및 관리 3. 사업수익 관리 4. POS 시스템 교육 5. 상품 관련 교육	개 별 교 육	추 후 공 지	필 수 교 육
	1. 마케팅 교육 2. 사업운영 3. 직원채용 및 관리 요령	실 습 교 육		
보 수 교 육	1. 고객 응대 교육 2. 상품 판매 교육	실 습 교 육 집 단 강 의	추 후 공 지	매 년 이 수 (필 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대박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VAT 포함)	비 고
신규 교육	약 5 일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추후공지	추후공지	필 수 교 육
추가 교육	추후공지		양수 · 양도 또는 상속 등 사유 발생 시 시행
기타 교육	1일	1일당 165	귀하가 필요시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 점포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할 경우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 ·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남	창원산호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길 84(산호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1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25,126	당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55-231-9192**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대박통 재무자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지 2. 대박통 점포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지 3. 대박통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